수직보호망 설치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호망의 설치·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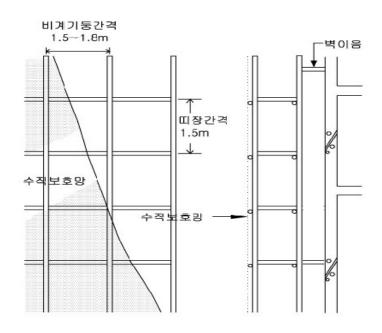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수직보호망"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.
 - (나) "갱폼(Gang form)" 이라 함은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·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·해체작업 및 미장·치장(견출) 작업발판용 케이지(Cage)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KOSHA GUIDE C - 29 - 2017

4. 설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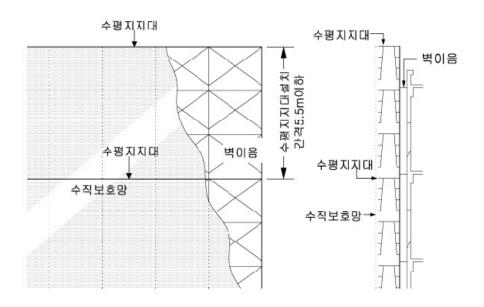
수직보호망을 강관비계 등의 바깥면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1) 강관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<그림 1>과 같이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수직보호망을 제작·설치하고,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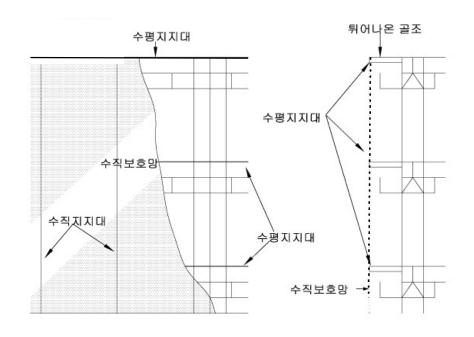
<그림 1> 강관비계에 설치하는 경우(예시)

(2) 강관틀 비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<그림 2>와 같이 수평 지지대 설치간격을 5.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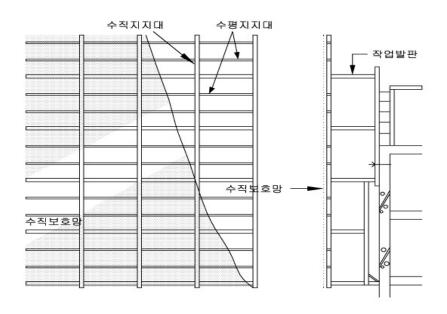
<그림 2> 강관틀 비계에 설치하는 경우(예시)

(3) 철골구조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<그림 3>과 같이 수직 지지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수직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3> 철골구조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(예시)

(4) 갱폼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<그림 4>와 같이 수평지지대와 수직지지대를 이용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4> 갱폼에 설치하는 경우(예시)

- (5) 수직보호망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용단, 용접 등의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 또는 방염성이 있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수직·수평지지대에 수직보호망 설치 또는 수직보호망과 수직보호망 사이 연결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해야 하며, 고정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7)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수직보호망을 붙여서 설치하는 때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0.98 kN 이상으로서 긴결방법은 사용 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, 긴결재로 케이블 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.

C - 29 - 2017

- (10) 수직보호망의 긴결재로 로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고리 구멍마다 로프가 통과하여 지지대에 감기도록 하여야 한다.
- (11)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 하여 벽이음을 보강하고, 벽이음을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가설 구조물의 전도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.
- (12) 기타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구조물의 단부,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5. 수직보호망의 관리기준

- (1)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는 보수,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
 - (나) 폭우,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, 지지대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
 - (다)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,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
 - (라) 수직보호망에 붙은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제거
 - (마)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직보호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
 - (바) 낙하·비래물, 건설기계 등과의 접촉으로 수직보호망이나 지지재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
- (2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직보호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(가) 수직보호망의 방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
 - (나) 보수가 불가능한 것
- (3) 수직보호망은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기간, 사용횟수 등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

C - 29 - 2017

6. 설치ㆍ사용 시 주의사항

- (1)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(KS F 8081)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"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"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수직보호망이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전도위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수직보호망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수직보호망의 성능이 신품과 동등 이상이고 외적으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.
- (5)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
 - (나) 제조 연월
 - (다) 안전인증번호